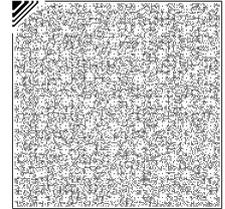
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, 응급, 분만,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(보험급여과-6259호, 2021.12.13.)
- 나.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·종료 안내 (보험급여과-4211호, 2023.8.30.)
- 다.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(2023.7.26.)

2.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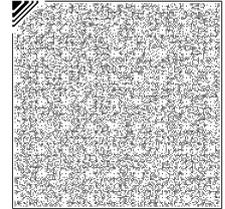
구분	기존	변경
적용수가	(OH011) 2,131.52점	(OH011) 1,065.76점
본인부담	법정보인부담률 적용 *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	환자 본인부담 면제 (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)
적용기간	'21.1.29.~'23.8.30.	'23.8.31.~'23.12.31.

3. 또한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중앙방역대책본부) 개정에 따라, 혈액투석, 응급, 분만, 수술 관련 코로나19 수가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니,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적용수가

-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(AH3B0, AH4B0, AH001, AH002 등)
-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(응6가.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-일반/JX999 이동식 격리병상)
-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(AH056, AH057)
-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(AH058, AH059)

-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(OH011)



○ 급여대상

- (기존) 코로나19 확진환자

→(변경) ①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른 **확진환자**

②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**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 RAT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19로 진단한 사람**

붙임: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신장학회장, 대한투석협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	<b>송서현</b>	보건사무관	<b>조영대</b>	보험급여과장	<b>정성훈</b>	전결 2023. 8. 30.
협조자						
시행	보험급여과-4218	(2023. 8. 30.)		접수		
우	30113	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				/ <a href="http://www.mohw.go.kr">http://www.mohw.go.kr</a>
전화번호	044-202-2737	팩스번호	044-202-3934	/ shsong98@korea.kr		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